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6

2017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찬성자 11명)
나. 발의일자 : 2017년 3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3월 27일
라. 상정결과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합병에 따른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스포츠클럽·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3)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개정안 개요

○ 동 전부개정안은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 생활체육 관련 보조금 지원,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의 설치 ·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목적)는 이 조례 제정(2001.9.29.) 당시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였으나 2015년 3월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 법을 이 조례의 상위법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을 하면서 수정된 “~지원함으로서”는 어떤 일의 수단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이므로 현행과 같이 “~지원함으로써”로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목 적) ---------- **지원함으로써** ----------.

○ 안 제2조(정의)를 신설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의 내용 중 제1호, 제4호, 제5호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생활체육진흥법」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비교>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현행 조례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의 제목을 바꿔 기술함.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사업추진)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행 조례의 제1호의 “범”자를 제외한 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 제2호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사업, 제4호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을 기술하고 있음.

개정안 제3호의 경우,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와 제9조의 조 제목을 기술하였으며, 제4호의 경우, 제7조제1항제3호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술한 것임.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 제9조>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 ② (생략)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 ② (생략)

또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현재 서울시에서 실행하고 있으므로 제6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생활체육진흥법」, 현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교>

「생활체육진흥법」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 범시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1. 시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1. ~ 5. (개정안과 같음)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4.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6.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신 설>**	**6. 생활체육종목단체와 구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개정안 제6호와 같음)

○ 안 제5조(보조금 지원 등)의 경우 개정안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영리단체(종목연합회 64개, 구체육회 25개)는 89개 중 83개(종목연합회 58개, 구체육회 25개) 단체에 ’16년 기준 약 21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종목연합회의 경우 조직·사업운영 평가에 의해, 구체육회의 경우 참여자 규모 및 참가팀 등에 따른 평가에 의해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안 제7조(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는 생활체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이 생활체육 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관광체육국 내 전문체육은 체육정책과에서, 생활체육은 체육진흥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관련 위원회는 체육정책과의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체육진흥관리위원회”와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가진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서울시민리그의 운영에 대한 “서울시민리그 운영위원회”와 여가스포츠의 육성 및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여가스포츠 정책 자문단”과 같은 해당 사업에 대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므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7972, 2016.7.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하고 소수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여성과 장애인 위촉에 대한 부분을 제7조제5항에 신설하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설정을 요하므로 제7조제6항을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개정안	수정안
제7조(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③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제7조(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장애인비율이 최소 1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3항의 경우, 간사를 생활체육담당부서장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를 “생활체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	수정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집행부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에 대해 신설 요청이 있어 확인한 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7972, 2016.7.1.)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3.12)[1]에 필요한 경우 규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9조(수당 등)를 신설하고,

더불어 위원의 해촉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위원 해촉 여부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를 신설하여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 자치법규 입안매뉴얼
- 라. 규정방식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목적 · 설치 · 기능 ·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방법, 간사 또는 사무기구(사무국 등)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규정,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위원 규정, 관계 기관 등에서 협조요청 규정, 공청회 등의 개최 규정, 수당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을 둔다(p152-153).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종합검토의견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정 목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를 보다 충실하게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부실위원회 양산의 문제점과 국정감사 지적(매일경제, '17.1.15.-참고자료1)이 있었으며,

지난 2016년 3월 30일 민관협력담당관실에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2], 제14조[3]에 따라 서울시 총 152개 위원회 중 17개(폐지4, 통·폐합5, 비상설화8)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체육정책과의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 등을 심의하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경우,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정비대상이 되었으나, 제도적 절차와 심의 등을 위해 존치시키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27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임.

동 개정안 제7조에 규정된 "생활체육발전위원회"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생활체육의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하여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취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제13조(위원회 활동 검검 등)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제14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음.

〈참고자료1 보도자료〉

서울시 위원회 26%가 연중회의 1번 이하 '부실위원회'

(매일경제, 2017.01.15.)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생긴 서울시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 동안 회의가 전혀 없거나 1번에 그치는 등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부실위원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박 시장 취임 후 신설된 위원회 49개 중 운영 실적이 부진해 집중관리위원회로 지정된 부실위원회는 전체의 26.5%인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택시정책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등이 집중관리위원회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회 이하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를 집중관리위원회로 매년 초 지정한 후 회의개최실적, 예산집행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은 부실한데도 위원회 수 자체는 박 시장 취임 후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의 위원회 수는 167개에 이르는데, 이 중 38.3%인 64개가 박 시장 취임 후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이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시민 전문가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운영회 수는 지난 2011년 박 시장 취임 당시 103개에서 지난해 167개로 늘어났다.

부실위원회가 양산되면서 서울시의 행정 절차가 쓸데없이 복잡해지고, 시의 예산 집행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운영회를 관리하는 데도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예산 책정을 할 때도 운영회 몫의 예산을 별도로 떼어놓다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실위원회 양산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부실위원회 정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부실위원회 정리를 위한 조례를 마

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원회 수는 꾸준히 늘어나 왔다. 현재 시 위원회 중 절반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 해체가 불가능한 반면, 나머지 절반은 시 조례에 근거해 만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각 부서들이 위원회 정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며 방치하고 있고, 위원회 해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회 정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위원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성과가 아니라 구성사실 자체만으로 치적을 홍보하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속 필요성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위원회 양산에 대해 서울시는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위원회 양산이 서울시만의 잘못으로 이뤄진 건 아니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크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시 운영회 중 절반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노력만으로 부실위원회를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실위원회에 배당된 예산이 매년 불용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실제로 회의를 열지 않으면 전혀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회의가 개최될 때도 회의 참가비·심사비 등이 위원회 1인당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를 규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위촉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추가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96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 - 2016.7.1.)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를 규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위촉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추가함.

2.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지원함으로서”를 “지원함으로써”로 함(안 제1조).

○ 서울시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제6호).

○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소수계층의 참여 구체화, 위원회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제6항).

○ 안 제8조제3항 중 “생활체육담당부서장”을 “생활체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함(안 제8조제3항).

○ 위원 수당,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지원함으로서”를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안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체육종목단체와 구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안 제7조제2항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7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장애인비율이 최소 1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생활체육담당부서장”을 “생활체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안 제9조는 제11조로 하고,
제9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목적) ---------- ------- **지원함으로써** ---------- ----------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신 설> 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개정안과 같음) **6. 생활체육종목단체와 구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7. (개정안 제6호와 같음)
제7조(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 성) ①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7조(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③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장애인비율이 최소 1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신 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생략)	제11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6. 생활체육종목단체와 구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체육 발전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생활체육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활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3한네 따른 자문 및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장애인비율이 최소 1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

한다.

1.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등 비영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